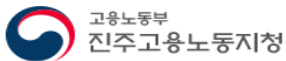




2026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목차

1. 노동정책·근로기준

2.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3. 고용정책·기업지원

노동정책·근로기준 - 주요 노동관계법 -



고용노동부 진주시청 노동기준조사과

최근 노동정책 방향

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시행

02

임금체불 처벌 강화

03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04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3조 개정

 시행: '26.3.10.

개요

-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의 교섭을 촉진,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노사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에 의한 분쟁 해결 도모

판단기준

1.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여부
2. 원청 사업에의 편입
3. 경제적 종속성

✓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절차

- ◆ (지방노동위원회) 미공고 시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 (지방노동관서)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
- ◆ (민사소송) 단체교섭 응낙의소, 단체교섭 의무 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과 가처분 등 제기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3조 개정

주요내용

○ 사용자 정의 확대

- **기존**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
- **개정**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 미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 인정
- *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 가능**

☞ 원청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하청의 근로조건

-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작업일정, 작업강도,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 집단적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인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3조 개정

○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합법 파업 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손해액 산정 시 조합원별 기여도 고려(→ 연대책임 완화)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개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당부사항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교섭 환경과 법적 책임 변화에 대비 필요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체불 전수조사·감독

처벌 강화에 따른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개선 필요

-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개정('26.3.12), 공포 6개월 후 시행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및 감독* 실시

✓ 조사 대상

- **'26년** 1년간 2회 이상 체불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
- **'27년** 1년간 1회 이상 체불신고 사업장 전체로 확대

* 감독관이 사업장 방문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 조사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체불 전수조사·감독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내용 및 준비서류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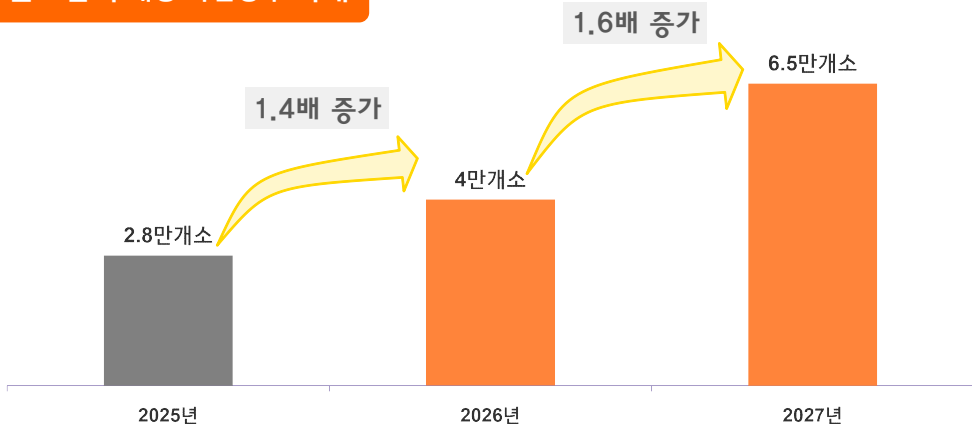
- ✓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여부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 최저임금 위반 등

준비서류

-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 ✓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 ✓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등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수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주요 근로감독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체불

✓ 1년 미만 및 쪼개기 계약 의심 사업장

*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으로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지급 등을 고의적으로 회피

✓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 형식적 근로계약,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등(콜센터, 카페, 제조업 등)

- 감독결과는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 4대보험 직권가입 및 세금징수 등 조치

* '25.12.1.~ '26.3.5. 108개소 감독(전국) → 총 72개소 1,070명 적발(체불금액 6.8억원)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최근 법원 및 노동위원회 판결

1.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건(대법원)
 -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단(근로자성 인정)
 - 복직후 근무중 차별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근로자 일부 승소)
2.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기법상 근로자' (충남지노위)
 - 미용실 대표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근로자에 해당)
3. 학원강사 사건(대법원)
 - 출근시간과 강의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학원측의 지휘를 받는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

-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
-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 및 사후조치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

✓ 임금 등 체불 주요 위반사례

✓ 자주 신고되는 사건 유형

-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
-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주요 위반사례

주요 위반 사례

임금퇴직금등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익월 임금지급일 지급) 등

통상임금

직책·자격·생산수당, 월정액 지급 식대·교통비 등 **통상임금 미산입**
→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과소 지급
* 통상임금: ① 소정근로의 대가 ② 정기적 ③ 일률적 지급

연차수당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축진 절차 미준수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미정산

연장수당

업무상 회의 등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외 법정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대한 연장수당 미지급

최근 자주 신고되는 유형

주요 위반 사례

최저임금 미준수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지급, 수습기간(3개월이내) 최저임금의 90%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서면 미교부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핵심내용 누락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명시하여 임금지급시 교부

4대 보험 가입 기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대 보험 미가입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 회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①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괴롭힘 성요 립건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지위) 지휘명령 관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
(관계) 수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

신체·정신 고통
근무환경 악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신체·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 발생

직장 내 괴롭힘(발생 시 조치)

사건접수

신고 또는 담당조직(담당자)의 괴롭힘 사실 인지 시 사건 접수

조사

지체없이 객관적인 **자체 조사** 실시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단,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X)

조치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의무, 피해자 의견 청취)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조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사용자 보고 및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 제외)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최근 노동정책(정리)

01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26.3.10.

02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03 체불 전수 조사·감독

- 임금 등 체불사건 신고 접수시 사업장 현장 점검

04 근로감독 강화

- 임금 등 체불, 1년 미만 계약, 쪼개기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중점 점검

05 최근 자주 신고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유형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직장 내 괴롭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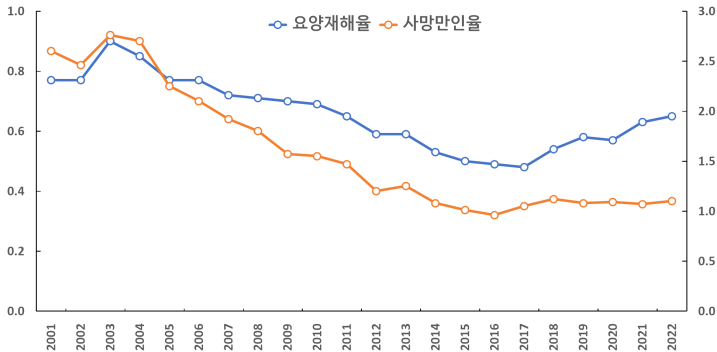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2026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진주시청 산재예방감독과

1) 요양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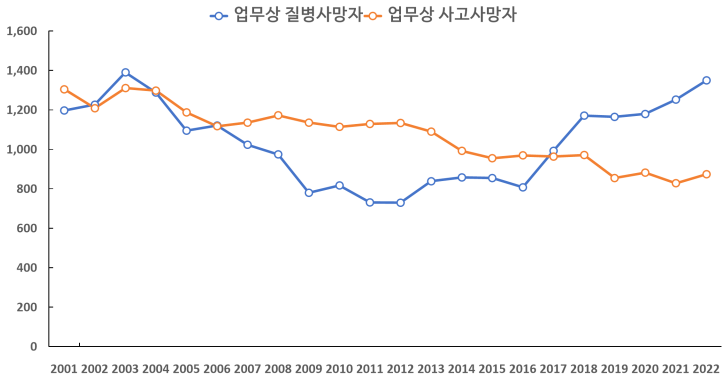


(출처: 통계개발원)

- 10년 중반 이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완만 증가

Why?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 기준이 완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

2) 업무상 질병사망자 및 사고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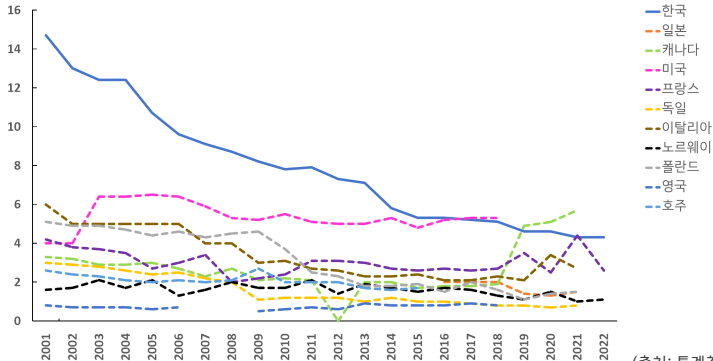


- 완만한 사고사망자 감소세

(출처: 통계개발원)

3)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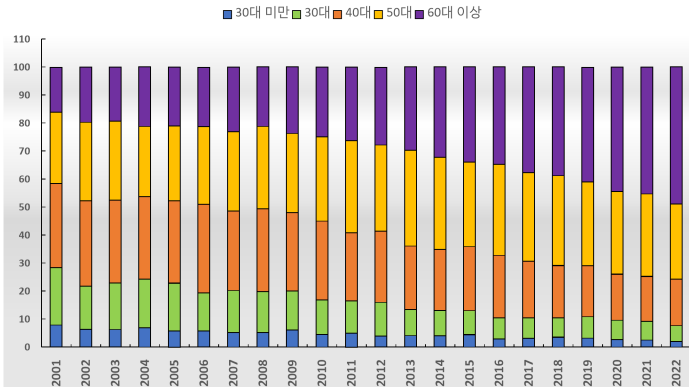
*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



(출처: 통계청)

-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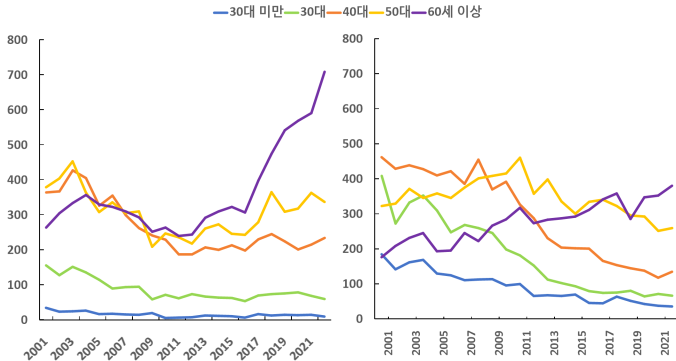
4) 산재사망 연령 구성



• 최근 60대 이상
비중이 커지는 중

('22년) 40대 미만 7.7%,
40대 16.6%, 50대 26.8%,
60대 이상 49.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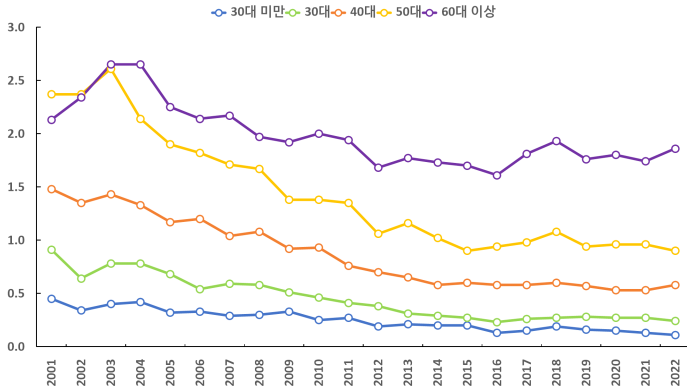
5) 산재사망 연령 구성(질병 VS 사고)



(출처: 통계개발원)

- '10년부터 질병사망 증가
: 새로운 질병 범주
도입과 질병사망인정
기준완화의 영향인듯
- 사고사망 60대 증가
: 노동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를 고려 필요

6) 연령별 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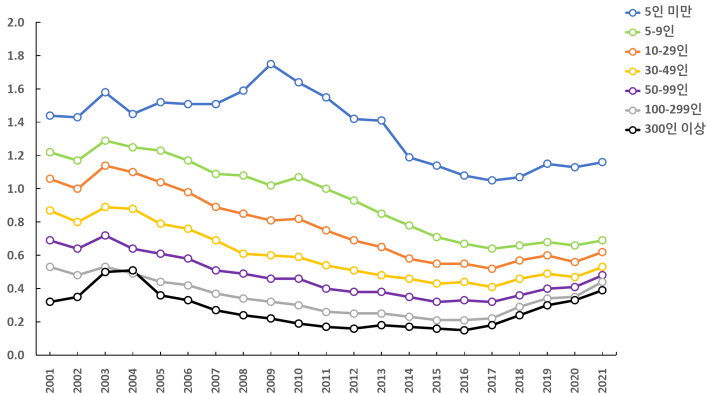


(출처: 통계개발원)

• 60대 이상과 다른
연령대의 격차가
최근에 와서 더 커짐

: 6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산재사고에 취약

7) 사업체 규모별 요양재해율



• 5인 미만에서는
감소세가
강하지 않았음

: 그 결과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격차는
2000년대보다 확대

위험 격차 해소

감독관은 노동자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
산재사고 해결에는 전부처가 나서야
(국무회의, '25.7.29)

작은 사업장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주요 대상으로



소규모 말단 현장에 닿는 정책 '길목' 적극 활용

*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 등 활용

예: 축사지붕 → 전국 한우 협회, 벌목 → 원목생산업협회 등



기술·재정지원

* 일터지킴이(1천명),
10인 미만 안전장비 지원(433억)



예방중심 감독

('25년 2.4 → '26년 5만개)

* 산업안전감독관

'25년 550명 + '26년 650명 증원

큰 사업장

결과에 대한 책임



안전보건공시제

*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정한 수사·감독

* 강제수사 적극 활용

→ 구조적, 근본적 원인 규명

안전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와 책임강화

✓ 추진배경

-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초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크게 증가*, 큰 사업장에서 대형사고도 여전

* 5억 미만 건설현장: '24.3분기 72명 → '25.3분기 91명(19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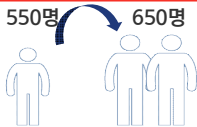
- 유형별 맞춤형 예방 정책으로 위험격차 해소 및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 조성

✓ [작은 사업장] 현장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산재 예방 지원

- (“길목” 적극활용) 지방정부, 관계부처·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전달 통로 확보

* (지붕·축사) 전국한우협회, 한국태양광협회, (벌목) 원목생산업협회, 산림사업법인협회
(한파)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질식) 상하수도협회, 한국양돈협회 등

○ **(지원·감독 연계)**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중심의 감독 집중



- 감독관 증원('25년 550명, '26년 650명)과 함께 기술 활용(예: 드론) 등을 통해
작은 사업장 중심 감독 대폭 확대('25년 2.4만개 → '26년 5만개)

- ① 감독계획 사전 전파, ② 계도기간 동안 「일터 지킴이」(1천명) 등 통해
기술·재정 등 실용적 지원*, ③ 계도기간 이후 집중 감독

*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위촉 → 작은 사업장 순찰·지도('26년 446억 신설)
10인 미만 사업장 안전장비 신속지원 및 지원 비율 확대('26년 433억 신설, 60 → 90%)

✓ [중견 사업장 이상] 사고조사·수사 및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 (엄중 책임) 중대재해발생 시 구조·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구속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중대재해 수사 조직·인력 대폭 확충
- (실효적 제재) 사망사고 다수·반복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에 재투자(산재기금에 편입)

* 영업정지, 과징금

1. 기름때(가연물) 관리

기름때는 화재확산의 주요원인! 정기적인 제거 필요!

- ① 절삭유를 사용 시 국소배기장치, 미스트 콜렉터(Mist collector) 등을 사용 및 관리
- ② 절삭유 미스트가 육안으로 보이면 오일 흡착포나 흡착제를 사용하여 제거
- ③ 절삭유 등 기름이 묻은 주변에서 용접, 그라인딩 등 화재 위험작업 금지
- ④ 벽면 등의 찌든 절삭유는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 /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
 - * ex) 드라이아이스 세정(Dry-ice Blasting), 고소작업 시 가능한 경우 '드론' 활용 등
- ⑤ 절삭유 등 기름 묻은 걸레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밀봉 보관

2. 화기 및 발화원 통제

불꽃은 기름을 찾습니다.

- ①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시 불꽃 확산을 막아주는 비산방지포와 내화 담요 사용
- ② 작업과 별도로 화재발생 여부를 전담 감시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
- ③ 절삭유 미스트가 사업장에 퍼져 기름 냄새가 심하면 전체 환기
- ④ 기계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과열 방지 및 누전·과전류 차단을 위한 조치

3. 생존을 위한 탈출로 확보

막힌 비상구는 살인 도구입니다.

- ① (2방향 대피로 상시 확보) 어느 방향에서 불이 나도 반대편으로 대피 할 수 있는 두 번째 통로 확보

※ 비상구 외에도 완강기 등 대체 대피 수단을 상시 확보

- ② 비상구 등에 적재된 자재를 즉시 제거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4. 초기 대응 시스템

작동 안 하는 소화기는 고철입니다.

- ① 소화기는 작업자 손이 닿고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관리
- ② 화재 비상경보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불이 나면 화재 비상경보를 발령하여
전 직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119에 즉시 신고

당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정책·기업지원

고용노동부 진주시청 진주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육아기10시출근제)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일·생활균형시스템지원)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정규직 전환 지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직장어린이집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1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26년 신설)

사업개요

- ☑ 지역별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복지+센터 취업알선 및 고용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유형	서비스 대상	지원내용
유형①	① 장기실업 청년 및 고령자(청년 34세이하, 고령자 55세이상) ② 실업급여 장기수급자(120일이상) ③ 구도폐 3회이상 참여자 *(공동) 실업기간 3개월이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알선(고용센터)
유형②	① 뿌리산업 ② 항공기 부품 제조업(31***) ③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86***/87***)	기업컨설팅(체질개선) 채용지원서비스 취업알선(고용센터)

지원요건

- ☑ (유형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복지+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
- ☑ (유형②) 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참여 후 체질 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에서** **고용복지+센터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기업

*단, 고용24 구인 및 구직 등록 필수

1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26년 50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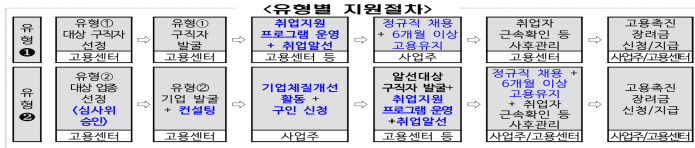
☑ 지원수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유 형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지원금액: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아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최대 30명 한도
단,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개요

- ☑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 ☑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육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1 단축제도 도입(취업규칙 또는 규정 마련)
- 2 근속기간 6개월(주35시간 이상 근무)
- 3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4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누락일월 3일 초과시 부지급)
- 5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 6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육아기 10시 출근제(*26년 신설)

- 1 (근로자 요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2 근로시간을 주 30시간(초과)~35시간
(이하)으로 단축(1일 1시간 이상 단축필요)
- 3 임금 미삭감
- 4 그 외,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규정 동일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1 주 35시간 이상 근무
- 2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3 최소 2주 이상 단축
- 4 연장근로 제한
(단축 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부지급)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내용

지원수준(단축근로자1인당)

지원대상

■ 장려금: 월 30만원(최대)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최대)

(단, 임금감소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미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지원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1)

사업개요

☑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사업대상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도 지원)

지원요건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승인

노사발전재단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간별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 시간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2)

지원수준

- ☑ 도입수준(전면<2시간 이상 단축>·부분도입<2시간 미만 단축>),
기업규모(50인 이상·미만)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까지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대비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60~80만원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직전 달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중인 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3)

지원금액

☑ 기업규모·단축 유형별로 차등 지원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 채용 추가 지원
지원 수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1년)
		▲ 생명·안전 업종, ▲ 장시간 노동, ▲ 교대제 개편, ▲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1년)
		▲ 생명·안전 업종, ▲ 장시간 노동, ▲ 교대제 개편, ▲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6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 ~ 50인 미만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4 유연근무 장려금(1)

사업개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 등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4 유연근무 장려금(2)

지원요건

-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③ 근로계약서 작성에 변경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선택근무

-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 ③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구분	근태관리기준
재택·원격근무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증빙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퇴근 시각으로부터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의 실제 출퇴근 시각이 변경된 출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	단축일에 변경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다른 날 근로 시간 증가 가능) 단축된 날의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이어야 함(총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

4 유연근무 장려금(3)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1년간)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진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5 일·생활균형시스템지원(1)

사업개요

- ✓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및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제도를 위해 출퇴근·인사관리 시스템 또는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2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지원
*설치형 방식 사용의무기간(2년), 사용료 방식 개별 약정사용기간(2년 이내)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출퇴근 및 인사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인사노무 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방지,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공동작업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5 일·생활균형시스템지원(2)

지원내용

-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을 위한 출퇴근·인사관리 시스템 +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사업주 최종 투자금액 확인 후 지급하는 사후지원 방식이나, 선금 50% 신청 가능(이행보증증권 가입 필요)

- ✓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형은 100%, 연 180만원 한도 지원(최대 2년 360만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신청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1)

사업개요

- ☑ 근로자에게 육아지원제도를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또는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2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
- 3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일반지원	30만원
	특례: 3개월 이상 연속된 휴직을 부여한 경우 첫 3개월간(이후 30만원) * 특례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육아휴직 일반지원금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10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추가지원)	10만원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

지원내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10만원 추가지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 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사업주 지급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

*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종류	지원내용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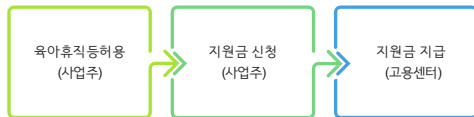
지원내용

- ☑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5명 까지 지정, 다만 합산 지원금은 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종류	지원내용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동	20만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7 정규직 전환 지원(1)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로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 ※ ①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②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③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최대 1년간

☑ **지원금액** ①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60만원, ②그 외: 40만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5인~10인 까지는 최대 3인 지원)

7 정규직 전환 지원(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심사·승인
(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이행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비수도권(1)

사업개요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기업)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지원대상



기업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일정기간(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 비수도권 유형으로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지원내용

-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 ☑ (청년) 6·12·18·24개월 근무 시 각각 180만원(최대 720만원)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비수도권(2)

• 지원요건

- ☑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지원내용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참여신청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1)

사업개요

-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 대상 고용연장 제도 도입 기업을 지원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사업주,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 비율이 30% 초과한 사업주

지원요건

-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중인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연장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①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



근로자 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 *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③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

지원수준 및 기간

- ✓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는 인력난 해소를, 취업 의지가 있는 50세~64세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신청절차

- ✓ 진주고용 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채용지원서비스

▶ 참여대상: 구인이 어려워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하는 기업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①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가)
- 복지수준(기숙사 등)
- 채용여건(기업인지도, 인력확보 가능성 등)

전담자 지정

② 노동시장정보분석

- 지역경기및기업체감도
- 산업전망
- 수요 분석

디지털기업지도활용

③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 경로 추천
- 고용여건 향상 설계
 - 인사노무 컨설팅
 - 맞춤 인재 양성
(훈련 연계)
 - 인프라 개선, 인지도 향상
- 종합 솔루션 제시

경로 설계

④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 밀착지원
- 정부지원 사업 연계
- 개선현황 모니터링

고용여건  채용여력 

⑤ 채용지원

- 채용박람회
- 일자리 수요데이
- 채용대행서비스

인력 충원

2 채용지원서비스-일자리수요데이 (고용부)

행사소개

-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현장면접 채용행사**
- ✓ 협업중심 고용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채용 지원

행사개요

- ✓ 일시 : 매주 수요일 상시운영(사전협의)
- ✓ 장소 : 진주고용복지+센터 4층 상설면접장
- ✓ 대상 : 지역내 구인·구직자
- ✓ 내용 : 참여기업 현장면접,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부대 프로그램 운영

한국남동발전 협업

- ✓ 현장면접 참여자 답례품 제공 및 현장면접 취업자(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취득한 자)
취업축하금 10만원 지급(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진주고용센터 취업지원팀 055)760-6706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으시나요? 고용24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24 기업회원 이용가이드 구인신청방법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왜 기업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고용24는 많은 사용자와 더불어 많은 곳에 채용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01 구인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입사지원관리	채용광고등록, 구직자 입사지원관리
화상면접서비스	무료 화상면접 진행
카카오 알림톡	면접일정안내, 채용결과 알림톡 사용
공고 동시게재	취업사이트 등 약 467곳 동시 게재

02 인재를 소개받거나, 찾을 수 있나요?

AI 인재 매칭	다양한 조건으로 AI 인재매칭
맞춤 인재	맞춤인재 설정,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
채용지원	인재 알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입사제안	SMS와 이메일로 구직자 입사제안

고용24 - 채용지원서비스 안내

구인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인서비스

01 채용지원서비스 신청

기업에서 고용센터로
채용지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03 서비스 참여

기업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여 참여합니다

02 접수 및 상담

고용센터에서 신속히
접수하여 상담합니다

04 채용결과 통보

기업에서 고용센터로
채용결과 통보합니다

채용지원서비스 선택

고용24를 통한 구인신청 시 필요한 채용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수요데이)

고용센터 등의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2 동행면접

업무기량은 있으나 면접 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면접 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

3 채용대행

채용심사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대신 수행하여 기업이
직원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

☐ 청년, 여성, 중장년층, 직업훈련기관 훈련(수료)생 등 구인직종 관련 신입, 경력직 모집의 어려움 시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350

2026 고용장려금 사업주 설명회

참고사항

고용노동부(www.molab.go.kr)
공지사항-2026 고용장려금지원제도 검색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